

Virtual currency and confiscation

Ju-Il Lee*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concept of virtual money, focusing on the case of how we can change the framework of fixed thinking about our trade concept and money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virtual money, which played a role as a means of trading in crime, could be discussed, and the court could put it in the category of "property" as a subject of confiscation. Many people are expressing empathy for the fact that there will be many traits in the future world that are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side, when the legal validity of the advantage is not recognized as the legal money yet to be recognized as the legal currency, it begins to be discussed as a necessary means of trading between individuals, businesses and individuals. Defining a legal character can be very significant in determining policy direction related to future operations of virtual money. But to date,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the legal character of virtual mone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Therefore, as we looked at in this case, we examined whether the property was subject to the seizure of the profits from the crime. Attention was also given to the possibility of such abuse of virtual money and whether effective legal interpretation was possible for the categories of assets subject to seizure.

▶ Keyword: Virtual currency, bit coin, criminal profit, confiscation, property

1. Introduction

“피고인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와 불법 도박장 개장의 범죄를 방조하고, 불법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대가로 지급 사례에서 과연 가상화폐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최근 법원에서 가상화폐의 몰수 대상으로 삼으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추징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있었다. 이에 수원 지방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양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최종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

• First Author: Ju-Il Lee, Corresponding Author: Ju-Il Lee
*Ju-Il Lee (leejuil@silla.ac.kr), Dept. of Public services, silla University
• Received: 2018. 05. 15, Revised: 2018. 05. 17, Accepted: 2018. 05. 19.

죄수익의 수수는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최근에 있었던 랜섬웨어 즉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이것을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면서 그 몸값의 댓가로 가상화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가상화폐는 광범위한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몰수제도는 우리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적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발생은 다양한 특별법을 통하여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적 위험은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였던 전형 다르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사조처럼 인식되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증대하는 시대에서 형벌의 기능을 어느 시절 보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논란은 심화될 것이다. 이는 형벌의 강화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형벌의 기본 이념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형벌은 자기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입장을 잘 견지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명이 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풍요로움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던 환경오염의 문제가 극복되기 어려운 과제가 된 것은 예방적 기능에 대한 역할의 정도를 잘못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개인과 관계 맺은 특정한 집단들끼리 신뢰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가상화폐를 통한 그들만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범죄적 도구화로 인하여 공동체 중심이나 국가 중심주의적 정책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변화를 회구하는 자유 시민들의 욕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풍요속의 오염과 같은 거대한 위험을 맞이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의 몰수의 범위와 관련된 판단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형벌의 역할에 대한 확대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별법을 통하여 범죄수익의 환수나 몰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그 몰수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입법적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비판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의 탈정형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어떻게 비례성을 지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II. The legal characteristic of virtual currency

1. Difficulty in establishing concept of virtual currency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통성을 가진 통화 혹은 암호화된 화폐의 발생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의 차원에서 발생되고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출발 하였는 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고 있다. 끝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통화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취하는 자세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에서 지금의 스마트폰이 개발되었을 때에서 냉장고가격과 버금가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와 비슷한 이러한 물건이 어떤 유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인류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물건으로 인식되고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에 적용되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좀더 고도되어 이를 뿐이라는 점에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기도 어렵다. 법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 또한 지금은 입법의 형태에서 자율적인 영역에 맞게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가상화폐의 다양하고 예측 가능하기 않은 특이성이 존재하고, 발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발전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도 판단이 쉽지 않은 사정이고 보면 좀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법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특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인 개념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과학이 등장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생각의 틀과도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부개척시대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성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통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제를 통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열풍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고, 그러한 부작용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지금의 법률적 잣대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불확실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예상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유사 수신행위를 통한 대출사기나 금융사기의 경우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사기의 경우 자신이 마치 휴대폰을 사고 이를 활용한 대출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구입한 영수증만을 찍어 보내주는 방식은 지금까지의 거래방식으로 본다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영수증에는 핀(PIN)방식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가 행하여 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의 수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고전적인 방식의 형사절차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인지하거나 조사는 것이 사실상 형해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범죄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특별법의 형태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거나 몰수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적 위험과 범죄수익이 마치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불명확한 목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형법이 역할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는 형법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정치화될 우려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법제는 정당성과 효율성과 과학적 실효성 보다는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변화무쌍함을 지니고 있었고, 규제와 자율을 정치적 상황인식에 따라서 변화해 온 점을 볼 때 형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심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율의 영역과 통제 영역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범죄적 위험은 가상화폐분야만 놓고 보아도 생물처럼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적 위험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될 것이다.

2. Criminal Risks of Virtual currency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상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인 ‘재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포함되는가의 문제되었다. 가상화폐의 특이성은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문제의 출발이 있다. 더욱이 가상화폐는 특이성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익명성이라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기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의 산물들이 혁신의 길목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익명성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랜섬웨어를 비롯한 악성코드를 이용한 타인의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 혹은 정상적인 정보를 인질로 삼아서 복구비를 요구하고, 이 복구비의 대가로 수사기관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죄를 범하는데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틀은 고정관념일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테러집단이 무기구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래대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등 그 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익명성을 기반한 가상화폐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형법적인 요소를 형법적 통제수단인 몰수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위험성이 대단히 특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점을 긍정한다고 하여도 예상하기 어려운 범죄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범죄의 반복성을 막기 위한 조치의 목적을 가진다. 변화무쌍한 가상화폐의 활용도를 과연 범죄적 위험의 도구화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론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범죄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의미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III.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1. Concept of confiscation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제도를 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범죄를 통하여 얻어진 이익인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함으로써 인하여 범죄를 통한 수익을 얻는 행위를 제어하여 범죄의 반복성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특별법상의 몰수를 입법화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몰수의 성격은 재산형이면서 부가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그리고 몰수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로 나눌 수 있는데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몰수가 법관의 재량임을 의미한다. 몰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파악하거나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투기적 성향을 보이면서 관련범죄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관련성이 높아지면서 범죄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범죄 연구회 등을 발족시키고 범죄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투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서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보호를 위한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 할 것이다. 몰수제도의 취지는 범죄수익의 박탈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몰수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을 차단하여 형사처벌의 실질적인 위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범죄적 경향의 도구로 전락된 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몰수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 그러면서 형벌이 지닌 비례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몰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형벌이 과도한 것이라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다. 몰수는 형사법적 영역, 행정법적 영역, 상사법, 민사법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하여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개념이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징벌적 특성이 크다. 수출입신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개된 시장원리의 작동을 위하여 몰수의 개념은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되고 진다고 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활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이를 범죄적 유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몰수의 개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각 법률의 영역에서 보다 실효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적 위협의 특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논의는 더욱 진전되고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Expansion of objects of confiscation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범죄수익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비롯한 불법한 목적으로 얻어진 수익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국제적 추세라 할 것이다. 몰수의 대상은 대물적 요건과 대인적 요건으로 구분하는데 본건에서는 대물적 요건에 대한 논의만이 필요한 부분이다. 몰수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은 몰수대상에 기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면서 이러한 물건에는 유체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 2004도144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통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위조통화나 위조된 문서가 해당될 수 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의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Objects of confiscation ‘The ‘property’

기본 형법을 비롯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많은 다양한 형태의 특별법을 통하여 범죄수익의 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의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에서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뇌물을 통한 재산 증식의 경우에 뇌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에서 유래한 범죄수익까지도 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여 재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과연 가상화폐를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몰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범주 속에 가상화폐를 포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이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재산은 유체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재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은 아니라 하여도 가상화폐는 개인과 개인간의 공간속에서 이전이나 재산등으로 인식되고 투자의 개념속에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유의 대상이 되고 재산의 보호법적인 소유권이 법적인 보호의 영역 밖에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있고, 사용 수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재산으로서 실체를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의 가능성이 비록 희박하여 실체를 규명하거나 확정하기 어렵다 하여도 가상화폐가 가진 범죄적 위험성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범죄적 유인을 막기 위해서라는 공익적 목적을 들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발달하고 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하여 실제로 불확실한 위험들을 제거하는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범죄적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산이라는 개념의 명확성 보다는 범죄수익의 몰수라는 다양한 몰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험원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실체가 불명확한 것을 규제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유의미성은 대단히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IV. Conclusions

본 사건에서 범죄의 거래의 목적으로 얻은 수익인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피고인은 몰수의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특별법으로 범죄수익의 몰수제도를 두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통제되거나 규제되는 범주안에 존재하는 대상물이 아니고,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점, 비

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시세의 변동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가치를 측정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블록체인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압수된 비트코인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기록이 보관, 승인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특이성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다 (, p.11.: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그리고 몰수의 대상에서 다양한 특별법은 통하여 범죄수익을 통하여 얻어진 ‘재산’에 대한 몰수를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장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암호화된 문서의 해킹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인 것이지 이것이 범죄수익을 특정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몰수의 대상물은 몰수에 관한 다양한 특별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범죄수익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통하여 그 가치를 생성하고, 또는 비록 가상의공간이지만 보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디지털 데이터처럼 무한하게 복제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등의 특이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사이버상에서 유통되어온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참조)를 보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법에 의하여 공식적인 교환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개인간의 특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집단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고 법정통화로 교환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은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의 초기에 불법적인 분야의 거래를 통하여 오늘날의 세상이 열린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불확실하고 특이성의 시대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몰수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쪽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범죄적 우려나 악용이나 남용의 우려를 불식하는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기반의 다양한 거래수단의 등장은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충분한 기여를 할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에 초래될 위험은 형법적이지 않은 범죄의 형태와는 변화된 양상의 위험이 초래될 것이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삶에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대량생산에 의하여 풍요함은 얻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

(이용식, “위험사회에서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42면 참조).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올 풍요로움의 뒤편에 더 큰 그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예방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REFERENCES

- [1]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of January 1, 2018 Decision No 2017 No 7120.
- [2] SJ hwang,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2, 2018.
- [3] Kwon Young-joon, November, 1994 issue (circulation 453), 1994.10.
- [4] Bae Jong Dae, General Criminal Law, Hongmunsa, 2016
- [5] Bae Jong Dae, Previous book, 2016.
- [6] Virtual Money Crime Prepared by Prosecutors, Maeil Business, January 10, 2018
- [7] Ransomware rushes to virtual money hike in the outbreak, electronic newspaper, December 27, 2017.
- [8] Supreme Court, 2004. 5. 28. 2004 Do 1442
- [9] Kim Hye-kyung, “The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procedure of forfeit without prosecution in a new criminal law amendment, Vol. 26, No. 2,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 [10] Lee, Jae-Sang, General Criminal Law, Park Young-sa, 2014.
- [11] Park Sang-ki, General Criminal Law, Park Young-su, 2012.
- [12] Yang Hyung-woo, Introduction to Civil Law, PNC Media, 2015.
- [13]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2014.
- [14] Winfried Hassemer,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üterschutz, NSTz 1989.
- [15] Lee, Yong Sik, "Protecting Legal Advices and Active General Prevention in Risky Societies", Criminal Policy Vol. 13, No. 1, Korea Criminal PolicyInstitute, 2001.

Authors



Ju-Il Lee received the B.S., M.S. and Dr. Jus. degrees in Criminal law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in 1989, 1995 and 2002,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s at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in 2007.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s at Silla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Computer crime, Cyber Crime, Internet related crime.